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신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5.10.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계열사와의 자문 용역 계약 등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신자산운용㈜(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계열사와의 거래 시 계약 조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쟁계약에 의한 방식이 원칙임에도,

계약 조건 및 수의계약 해당 사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 및 검토 없이 일률적 요율로 계열사와 펀드 간 PM계약 등을 체결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회사와 계열사 간 보수 산정기준 및 적정성 평가 없이 자문보수가 결정 또는 변경되거나 지급이 누락된 사례가 존재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계열사와의 거래 시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 조건의 적정성, 지급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운영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보완 필요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은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원가와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와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정의하고 있어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의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 없이 취득원가로 평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재평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합투자재산 평가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취득원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평가액을 결정하는 등 집합투자재산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